석명 준비명령 이의 신청서

사건 2005나84701 교수지위확인(서울고법 민사 제2부 나, 박홍우 부장판사)
원고 김명호,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415, 중앙하이츠빌 105동 1504호
(휴대폰:010-5590-8913)
피고 학교법인 성균관 대학, 서울 종로구 명륜동 3가 53 이사장 권이혁

두 번의 선고기일(6월 16일, 7월 21일)을 연기하고, 석명준비명령을 내린 박홍우 재판장의 조치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38조 (합의부에 의한 감독)

"당사자가 변론의 지휘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 또는 제136조 및 제137조의 규정에 따른 재판장이나 합의부원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판한다."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의 신청합니다.

첫째: 위 교수지위 사건의(이하 '이사건') 주요 계쟁 사실과 피고 본고사 수학문제 출제오류 지적에 대한 보복이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둘째: 재판지연 의혹을 주고 있는, 부적절한 시기의 석명권 행사 및 한계 일탈 등

자세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사건의 주요 계쟁 사실과 피고 본고사 수학문제 출제오류 지적에 대한 보복

1. 대법원 판례(선고 83다카1489)에 판시되었듯이, 심판 대상은 원고, 피고의 공격과 방어 주장 사실들 입니다.

대법원 1983.12.13. 선고 83다카1489

준비 서면

사건 2005나84701 교수지위확인(서울고법 민사 제2부 나, 박홍우 부장판사)
원고 김명호,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415, 중앙하이츠빌 105동 1504호
(휴대폰:010-5590-8913)
피고 학교법인 성균관 대학, 서울 종로구 명륜동 3가 53 이사장 권이혁

위 당사자간 교수지위확인사건(이하 '이사건') 관련 석명준비명령에(2006년 7월 24일 수령)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변론 준비합니다.

[1의 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 및 재임용 심사 절차의 경위에 대하여 시기별로 설명

<답변> 피고 성대의 석명사항으로 사료됩니다.

[1의 나]: 갑 제 22호증(징계사유 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답변> 없습니다.

다만, '입학시험 채점 업무 시 배타적인 태도로 혼란 야기'의 경우

1995년 1월 16-17일 경, 원고는 95학년도 피고 성대의 수학 본고사 수학 II 7번 문제 채점위원으로서, 출제오류를 발견하고 학자적 양심과 수험생들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동점처리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반면에 출제교수 이우영, 채영도를 비롯한 수학과 및 수학교육과 교수들은 원래의 모범답안을 수정하였고, 그 수정모범답안에 따라 채점해야 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 후, 피고 성대는 출제오류를 부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학자적 양심에 의한 주장을 해교행위로 규정하고 징계한 사실이 있었습니다.(갑 제23호증, 수학과 및 수학교육과 교수 일동의 증언, 갑 제24호증, 수학과 김미경 교수와의 대화)

[1의 다, 거] : 을 제 6호 증의 2(인지사항), 을 제 10호증의 1내지 3(진술 및 증거, 위반 및 태만)의 수학과 교수들 주장에 대하여

<답변> 없습니다.

접수 No.
2006 09 15
서울고등법원 종합접수실